창구번호 ( )

※ 취업 시 재직증명서(또는 근로계약서)와 함께 입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.
※ 구직활동 모니터링 후 취업촉진위원회 출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[Fax : 0508-8230-0687]

실 업 인 정 신 청 서

신청인 (수급자격자)	① 성 명	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 소	(전화번호 : - -) (휴대전화번호 : - -)		
④ 지정된 출석일 (실업인정일)			⑤ 실업인정대상기간	지난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– 당일까지
⑥ 지급계좌	신규신청 [ ] 변 경 [ ]	은행명: 계좌번호: 예금주: * 지급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"압류방지 전용통장" 발급받아 기재		
⑦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사실 등 확인	근로사실 및 소득발생 (일용직,아르바이트, 임시직 포함)	[ ] 없음 [ ] 있음 [근로일: 소득(예정)액:]		
	사업자등록 (자영업개시)	[ ] 없음 [ ] 있음 [등록일(시작일): 사업내용:]		
	산재휴업급여	[ ] 없음 [ ] 있음 [재해일:]		

⑧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

구직활동

일자	업체명	전화번호	직종	구직방법	구직활동결과
				면접/인터넷	
				면접/인터넷	
				면접/인터넷	

자영업 준비활동

취업(예정)내역: [ ] 취직 [취직(예정)일: 회사명: 전화번호:]
[ ] 자영업 [시작(예정)일: 사업내용:]

구직활동 외 활동사항

내용

[ ] 고용센터 집체교육
[ ] 직업지도 참여(취업특강 등)
[ ] 집단상담 프로그램
[ ] 직업훈련 수강
[ ] 기타 ( )

[ ] 취업확정자
[ ] 사회봉사활동 참여자
[ ] 부당해고 구제신청자
[ ] 재취업활동 없는 자

⑨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하여야 할 활동

[ ] 구직활동 ( )
[ ] 고용센터 집체교육
[ ] 직업지도 참여(취업특강 등)
[ ] 집단상담 프로그램 ( )
[ ] 자영업 준비활동
[ ] 직업훈련 수강
[ ] 사회봉사활동 참여
[ ] 기타 ( )

⑩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
*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

[ ] 휴대전화 문자메시지
[ ] 전자우편 (이메일 :)

「고용보험법」 제44조제2항·제3항 및 제69조의9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·제66조 및 제93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실업인정을 신청하며,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V 년 월 일

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귀하

V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	1. 수급자격증 1부 2. (상해진단서,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면접확인서, 구직활동 내역서 등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90조에 따른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3.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강증명서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
※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.

실업인정 유형	[ ] 실업인정일 변경 [ ] 증명서에 따른 실업인정 [ ] 잠정실업인정 [ ]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[ ]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[ ] 유족에 따른 실업인정						
지급 사항	처리	실업인정일수		구직급여 산출명세		지급액	
		미지급사유					

접수	접수연월일	접수번호	결재	담당	팀장	과장	청장·지청장	결재연월일
	. . .							. . .